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8. 7.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금고지정시 수의 방법으로도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둔 것을 특혜 시비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 금고심의위원회 위원중 시의회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음
- 또한 금고지정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금고운영 및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1호를 합하여 같은 조 제1항 으로 조정
- 수의방법 금고지정 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 구미시가 경상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제2항)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2명으로 함
- 금고지정 기한 지정(안 제10조제1항)
 - 금고지정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지정

3.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2007.6.1 행정안전부 예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제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안 제5조제2항 중 “시의회의원”을 “시의회의원 2명”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금고 지정 방법) ①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제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구미시가 경상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생략)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①(생략)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u>시의회의원과</u>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⑥(생략) 제10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u>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u>	제3조(금고 지정 방법) ①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제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③(원안과 같음) ①(원안과 같음) ②.....<u>시의회의원 2명과</u>..... ③~⑥(원안과 같음) 제10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u>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u>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 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구미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 지정 방법)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포함)로 구분하며 회계별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4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금고지정 종료 때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일비 및 여비등의 지급) 시 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 제7조제3호의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다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관련)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소 계	3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3)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8) - 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8)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7)	
	소 계	18
2.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구미시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소 계	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소 계	1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4)	
	소 계	10
5. 지역사회기여 및 구미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5) 나. 구미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	